광주 수완지구 8-2블럭 대주피오레 입주자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팀 - 16375 (2007. 05. 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C8-2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2~25층 8개동 총545세대. ● 건폐율 : 17.76% ● 용적율 : 234.91%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주택형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공용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	대지지분	동별	층수	공급세대수	층별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차(계약시)	중도금 1차(2007.11.20)	중도금 2차(2008.04.18)	중도금 3차(2008.09.19)	중도금 4차(2008.12.19)	중도금 5차(2009.03.20)	잔금(입주지정일)
민영주택	143.5855 (43.43)	117.8160	25.7695	143.5855	54.8568	198.4423	62.5298	203 (1~52라인)	22	8	3~4층	283,000	14,1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99,100
										68	기준층	290,000	14,5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101,500
										4	최상층	327,000	16,300	32,700	32,700	32,700	32,700	32,700	114,500
	145.2159 (43.92)	118.9130	26.3029	145.2159	55.3675	200.5834	63.1120	202 (1, 52라인)	21~24	2	1층	253,000	12,600	25,300	25,300	25,300	25,300	25,300	88,600
										2	2층	271,000	13,500	27,100	27,100	27,100	27,100	27,100	94,900
										4	3~4층	278,000	13,9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97,300
										35	기준층	285,000	14,2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99,800
										2	최상층	322,000	16,100	32,200	32,200	32,200	32,200	32,200	112,700
	145.2159 (43.92)	118.9130	26.3029	145.2159	55.3675	200.5834	63.1120	204 (1, 52라인)	25	2	1층	262,000	13,100	26,200	26,200	26,200	26,200	26,200	91,700
										2	2층	280,000	14,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98,000
										4	3~4층	287,000	14,300	28,700	28,700	28,700	28,700	28,700	100,500
										40	기준층	294,000	14,7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102,900
										2	최상층	331,000	16,500	33,100	33,100	33,100	33,100	33,100	115,900
	152.2044 (46.04)	124.9710	27.2334	152.2044	58.1883	210.3927	66.3272	202 (2~32라인)	24	4	1층	281,000	14,0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98,400
										4	2층	295,000	14,700	29,500	29,500	29,500	29,500	29,500	103,300
										8	3~4층	307,000	15,3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107,500
								204 (2~32라인)		76	기준층	319,000	15,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111,700
										4	최상층	361,000	18,000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126,400
	165.5894 (50.09)	129.7080	35.8814	165.5894	60.3939	225.9833	68.8414	201 (1~22라인) 205 (1~22라인) 206 (1~22라인) 207 (1~52라인) 208 (1~52라인)	12~22	12	1층	309,000	15,400	30,900	30,900	30,900	30,900	30,900	108,200
										12	2층	323,000	16,1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113,100
										32	3~4층	336,000	16,800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117,600
										202	기준층	350,000	17,5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22,500
										16	최상층	398,000	19,9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139,3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물통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의 견축공정이 미포함이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이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계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2003. 11. 18.지정)로 지정되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광산구는 투기지역(2005. 6. 30.지정)으로 지정되어 분양대금의 대출이 일부 제한됨.

■ 신청 자격 및 공급 일정
1) 민영주택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7.05.24)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2)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 약 관 련 예 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예치금액으로 납입 완료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1순위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80.8.29이전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0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통가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소유사실 포함한 분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소유사실 포함한 분 - 2002. 9. 5일 이후 가입한분 중 세대주가 아니분 (2002. 9. 5일 가입자 포함)	광주광역시	2007. 05. 29. (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시간 : 평일 9:30~16 : 30	● 일시 : 2007.05.31. (목)(14: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장소 : 견본주택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당첨자 가능한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 중 1순위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광주광역시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광주광역시	2007.05.30.(수)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청약변경 요건 -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기입하여 기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청약변경한 경우는 변경일, 평형변경한 경우는 평형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첫수에 관계없이 평형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평형만 신청 가능 (단, 1년 미만인자는 변경전 평형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의 수용개시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방법
- 주택청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를 접수치 않음.
- 청약 1 · 2순위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민영주택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 견본주택에 공급신청을 해야 함.(인터넷 청약접수 불가함)
- 입주자선정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민영주택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아 당사에 접수, 3순위 : 견본주택 비치 •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 (제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 초 · 등본, 의료보험증 등) : 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가주거,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가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무주택우선순위 및 1순위	• 청약 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가능(확인불가시 주민등록초본1통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2002.9.5 이후 가입한 분 중 1순위 자는 세대주자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호적등본 1통 (단)세대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청약예금 통장 사본 1통 (청약인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서류서 (양식은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제외 존 · 비속포함) 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이 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서 비치)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소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금액	신청금납부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가능한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07.06.01.) 이후 평일 09:30~16:30 (단, 토 · 일 ·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 환불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기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이 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될 수 있음【단, 신청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중복청약 및 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 불가(신청주택 전체를 무효처리)
    - 동일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공통	· 신청지 입최한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동 · 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을 때에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07.06.05.(화) ~06.08.(금) (평일 3일간, 시간 : 9:3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17번지 피오레 주택전시관
  - 문의전화 : 062) 367-3000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농협중앙회	1773-01-007448	대주건설(주)	

- 무통장입금시 통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
- 지정된 중도금 · 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 · 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계약시 구비 사항

구분	계약시구비사항
공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가족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 3 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09. 9월중(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최우선공급당첨자중 과거 10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자로 판명될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 사실상 양도분이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분이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최상층 세대의 다락방은 해당입주자가 사용하는데 티입주자가 이의 없이 동의하며 개인소유면적으로는 등기부상 등재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에 대해서는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입주전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유의사항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관리실 등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적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확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동일한 청약저축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자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색체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고 추후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붙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중심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방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평형면적(㎡) × 0.3025 또는 평형면적(㎡) ÷ 3.3058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및 수입품인 경우에는 양질의 대체 제품 및 동질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시공사가 유연성있게 선택할 수 있음.
- 홈페이지상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하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마감자재 내용은 Type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을 축조하기 앞은 주택형 및 Type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청약 및 마감자재 선택 시 실제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바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확장 할 수 있으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 · 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 사업주체가 대출실행선시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대출신청자 본인부담이며, 금융거래신용불량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및 농작물경작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층질 시공을 위하여 설폼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계약세대는 다락방 내부 연결계단의 위치에 대하여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층 필로티에 접한 세대는 계약시 반드시 분양상담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내 설치된 세대내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공작물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함.
  - 외국인 미거주자인 국내 설립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사회 및 계약정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사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일부세대에는 아산정 시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은 한국토지공사,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음.
- 단지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